

제305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정관 변경 보고

2022. 2.



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(안)

1. 변경사유

- 서울연구원 규정 정비 미이행사항 시정조치 요구(서울시 공기업담당관 -14479, 2021.12.31.) 및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 정비
 - 시정조치 요구사항 : 조직 및 정원 정관기재
 -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연구원 주무부서 변경 → 당연직 감사 변경

2. 주요내용

- <별지>를 [별표]로 용어 정정하고, [별표] 번호 새롭게 부여(안 제5조)
-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감사 변경(안 제17조)
 - 서울특별시 조직개편('22. 1. 1.)에 따라 연구원 주무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 당연직 감사를 기존 조직담당관에서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연구원의 조직에 대한 '기구표' 및 정원에 대한 '정원표' 신설(안 제20조)
 - 연구원 조직과 정원에 대한 사항을 [별표]의 '기구표'와 '정원표'로 신설

3. 부 칙

- 시 행 일 :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재산)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 다만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,000원으로 하며, 기본재산목록은 <별지>와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재산)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 다만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,000원으로 하며, 기본재산목록은 [별표 1]과 같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감사의 선임 등)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, 당연직 감사는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으로 한다.</p>	<p>제17조(감사의 선임 등)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, 당연직 감사는 서울특별시 지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.</p>
<p>제20조(직제) ① 연구원에 부원장, 연구부서, 행정부서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둔다.</p> <p>② 전항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20조(직제 및 정원) ① 연구원의 조직은 [별표 2], 정원은 [별표 3]과 같다.</p> <p>② 전항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</p>
<p><별지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재산 목록 (생략)</p>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본재산 목록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구표</p> <pre> graph TD A[이사회] --> B[원장] B --> C[연구자문위원회] B --> D[감사실] B --> E[성평등인권센터] B --> F[정책협력관] B --> G[부원장] G --> H[연구기획조정본부] G --> I[도시사회연구소] G --> J[시민경제연구소] G --> K[도시경영연구소] G --> L[교통시스템연구소] G --> M[안전환경연구소] G --> N[도시공간연구소] G --> O[도시정보실] G --> P[경영관리실] G --> Q[도시외교연구소] G --> R[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] </pre>

회 행

개 정 안

<신 설> [별표 3]

정 원 표

직 종	직 급	정 원
계		234
임원(상근)	원 장	1
연구직	선임연구위원	84
	연구위원	
	부연구위원	
	연구원	71
일반직	1 급	4
	2 급	10
	3 급	14
	4 급	9
전문직	1 급	3
	2 급	7
	3 급	10
	4 급	5
공무직		16